

外國人著作権保護의 經濟的 波及效果

—出版物을 中心으로—

鄭 鎮 勝

새로운 著作権法이 금년 7月부터 施行됨에 따라 外國人著作物을 國內에서 出版하기 위하여는 外國著作権者에게 著作權 使用料를 支給해야 한다. 1984年 現재 翻譯된 外國人著作物의 規模는 8,255種, 金額으로 약 440億원으로 각각 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本研究에서는 外國人著作権 保護에 따른 出版物의 價格上昇으로 인한 消費者 負擔의 增加와 著作料 支給으로 인한 外貨支出 負擔을 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國內出版產業의 現況을 分析하여 外國人著作物의 無斷翻譯·複寫出版物의 市場規模을 把握하고, 둘째 著作物 生產費用의 構造와 流通過程의 把握을 통하여 著作物의 消費者價格 決定要因을 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資料를 活用하여 外國人著作権 保護時의 價格上昇 및 外貨支出規模을 推定하였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外國人著作権의 保護로 인하여 翻譯物과 複寫物의 價格은 각각 12%와 25% 上昇하며, 1987~91年 기간中 外國著作権者에게 支給된 著作料의 規模는 98億원(1,200萬달러)에 달할 것으로豫想된다.

I. 序

政府는 1980年 新しい 著作権法을 作成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施行하기로 결정한 바 있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稿을 읽고 有益한 助言을 해주신 李永琪·宋大熙·楊秀吉博士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어찌한 미비점도 筆者の 책임임을 밝혀 둔다.

1) 現行著作権法 第46條.

2) 改正法 第3條.

다. 우리나라가 比較的 短期間內에 改正著作権法을 成案하게 된 이유는 1957年 制定된 現行 著作権法이 現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著作物權益의 保護強化를 통한 文化의暢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원인은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으로부터 外國人著作의 保護要求에 因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政府는 實質적으로 外國人著作権의 保護를 否定하는 現行著作権法¹⁾으로 인한 對外通商摩擦을 해소하기 위하여 改正著作権法에서는 外國人의 著作権保護를 認定²⁾하고 있으며, 금년

중 世界著作權協會(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도 加入할 豫定이다³⁾.

本論文의 目的은 出版物을 中心으로 外國人 著作權의 保護로 인한 經濟的 波及效果, 즉 出版物의 價格上昇으로 인한 消費者負擔의 增加와 著作料支給으로 인한 外貨負擔등에 관하여 分析함에 있다⁴⁾. 이를 위하여 第Ⅱ章은 著作權制度의 目的, 意義에 관하여 略述하였으며 第Ⅲ章에서는 우리나라 出版產業의 現況에 관하여 論하였다. 第Ⅳ章은 外國人著作權保護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를 分析・豫測코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第Ⅴ章은 結論部分으로 構成된다.

II. 著作權의 主要內容 및 意義

著作權은 著作者가 자신이 創作한 著作物에 관해서 갖는 排他的 權利를 의미하며 크게 著

3) 改正著作權法은 外國人著作權 保護 외에도 다음의 主要事項을 포함하고 있다.

- (1) 著作權者の 權益伸張을 위하여 著作權의 保護範圍를 擴大하고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을 연장하였으며 著作隣接權을 新設하고(法 第 34, 74, 37, 61~67 條)
- (2) 著作物에 대한 公共利用의 伸張을 위하여 著作權 非侵害行爲인 著作權制限 경우를 현실에 맞게 細分化하여 規定하였으며(改正法 第 20~31 條), 公益上 필요한 著作物은 文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상당한 补償金의 支給 또는 供託 후 著作物의 이용이 可能하도록 하였으며(改正法 第 47~49 條)
- (3) 著作者와 이용자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著作權委託管理業 制度를 新設하고(改正法 第 75~77 條) 著作權 紛爭의 迅速한 仲裁를 위하여 著作權仲裁委員會를 設置할 것(改正法 第 78~86 條) 등을 포함하고 있다.
- 4) 엄밀한 의미에서 外國人著作權의 波及效果는 放送, 音盤, 公演 등 광범위하겠으나, 本稿은 現代 社會에서 제일 論難이 되고 있는 出版產業에 국한하기로 한다.
- 5) 道德的인 面에서도 著作物은 著作者個人 人格의 연장으로서 著作者는 自身의 著作物을 出刊・配布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權利를 保護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作財產權과 著作人格權으로 區分된다.

著作財產權은 著作者의 財產의 利益을 保護하고자 하는 權利로서, 주로 著作物을 第3者가 이용하는 것을 許諾하고 代價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이다. 이에는 複製權, 實演權, 演奏權, 放送權, 上映權 등이 포함된다.

著作人格權은 著作物을 정신적 創造物로 組정하고 이러한 知的財產은 著作者의 人格을 반영하며 人格 밖에 存在하는 物的財產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評價되어야 하는 非金錢的인 第2의 權利를 의미한다. 이에는 公表權(著作物의 公表 여부), 同一性維持權, 姓名表示權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에 대두된 概念인 著作隣接權이 탄생, 「레코드」製作者, 放送事業者의 經濟的利益을 위하여 著作物利用과 관련하여 주어진 權利로서, 實演家가 갖는 錄音・錄畫・放送 獨占權과 「레코드」製作者가 갖는 「레코드」複製을 獨占權 및 放送事業者가 갖는 複製權, 再放送, 有線放送 및 TV放送의 傳達權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經濟的인 側面에서 著作權制度의 存在에 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論難이 있을 수 있다. 著作物을 創作하기 위하여는 장기간 동안 막대한 人的・物的資源이 投入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投資는 적정한 利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論理에서 著作權制度는 創作意慾을 促進시키는 하나의 社會的手段으로서 妥當性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⁵⁾. 또한 著作物의 出版을 위한 生產費用中 著作物, 印刷組版費 및 編輯費用 등 固定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높아 出版物의 規模가 增大함에 따라 限界生產費用(marginal production cost)은 완만하게 減少하는 반면 平均生

產費用(average production cost)은 급격히 下落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著作權制度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著作物複寫企業은 막대한 固定費用의 投入없이 出版物의 複寫가 가능하여 出版企業에 비하여 낮은 價格으로 製品의 生產이 可能하며, 結果적으로 出版企業은 市場에서의 成功可能性이 낮은 著作物의 出版配布를 축소함으로써 著作物을 통한 社會權益은 減少하게 된다.

著作權制度가 經濟的 論理에서 否定的으로 해석되는 중요한 이유는 著作權이 創作者에게 일정기간 排他的 使用權을 부여함으로써 獨占(legal monopoly)을 形成하여 非效率의 資源의 分配와 不公正去來行爲를 유발할 可能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創作된 著作物은 公共財(public goods)의 性格을 갖을 뿐 아니라 第3者의 使用으로 인하여 他人의 效用이 減少하지 않는 消費의 非競爭的(non-rivalness)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著作物의 活用을 위한 社會費用(social cost)이 存在하지 않는 한 社會福祉의 極大化를 위하여 著作物의 利用價格은 “0”으로 해야 한다는 論理에서 출발한다.

著作權制度의 存在妥當性에 관하여는 贊反兩論이 存在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根本의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 져야 한다. 첫째는 과연 著作權制度가 著作物의 創作에 얼마만큼 寄與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著作權制度가 著作物創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現行의 著作權制度가 創作意慾을 增大시킬 수 있는 유일한 制度인가 하는 점과 著作權制度의 運用에 따른 社會的費用과 이로 인한 社會的利益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만약 著作權

制度가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制度라고 한다면 현재 著作權制度가 적절히 著作權者의 利益을 保護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歷史的으로 著作權制度가 존재하지 않을 당시에도 많은 著作物이 創作되었다는 사실은 著作權制度가 모든 종류의 著作活動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主張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게 한다. 이는 많은 著作者들이 著作物을 통한 金錢的 利益의 確保보다는 名譽를 존중한다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複寫企業은 社會에 複寫著作物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는相當量을 生產·配布해야 하며, 이는 結果적으로 過剩供給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出版企業의 著作物價格이 適正하게 결정되어진 상황에서 複寫物의 生產은 價格의 下落을 초래하여 出版企業과 複寫企業이 동시에 損失을 초래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出版企業은 市場先占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이미 認知되어 있기 때문에 複寫企業은 相對的으로 보다 많은 廣告費를 支拂해야 하는 價格上昇 誘發要因이 있으므로 소위 浸透費用(penetration cost)를 支給해야 한다. 또한 先發出版企業은 複寫企業이 出現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市場을 獨占할 수 있어 複寫出版物이 生產되는 時點에서는 價格이 限界生産費用과 동일한 소위 擊殺版(killing edition, 혹은 fighting edition) 등을 出版하여 複寫企業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論理를 綜合하여 볼 때 모든 著作物의 創作·出刊·配布를 위하여는 著作權制度가 필수적이며 유일한 制度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즉 첫째 著作權이 存在하지 않더라도 創作되어 複寫企業이 존재해도 出版企業이 生

產費用을挽回할 수 있는 著作物의 경우에는 著作權이 불필요하게 되며, 둘째 著作權이 있어도 著作者의 創作意慾促進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出版費用의 회수가 불가능한 著作物의 경우에도 著作權制度의 존재가 무의미하며 세째 著作權制度가 존재해야만 創作·出刊·配布되는 著作物에 대하여는 著作權制度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目的은 다른 方法(예를 들면 政府의 支援)으로도 達成될 수 있다.

III. 우리나라 出版產業現况

國內出版產業의 市場規模는 1980~85年 기간中 年平均 約 16% 增加하여 1985年末 約 5,267億원에 달한다. 經濟規模面에서 出版產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約 0.4%(1985년 GNP基準)에 불과하나 出版物의 長期的으로 國家의 社會·經濟·文化面에 미치는 中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同產業의 중요성은 단순히 GNP와 比較된 숫자상의 의미로만 解釋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84年末 國內에는 總 2,519個의 出版會社가 등록되어 있으며 總出版種數는 33,156種, 金額으로는 4,043億원에 달한다. 總 2,519個의 出版社中 同年에 200種以上의 出版物을 발간한 會社는 전체의 1.1%인 26個會社에 불과하며 出版實績이 전혀 없는 會社는 전체의 26.8%인 674個社에 달한다. 分野別 出版種數를 살펴보면 文學이 7,861種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兒童圖書의 5,553種, 社會科學의 3,968種, 學習參考書의 3,547種의 順으로 되어 있다. 種別出版金額面에서는 學習參考書가 1,680億원으로 제일 많으며 다음은 兒童圖書 417億원, 宗教 404億원, 文學의 362億원의 順으로, 分野別 種當 出版部數와 卷當價格間に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4年中 5人以上의 從業員을 保有하고 있는 348個 企業을 중심으로 出版產業의 特性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表 1). 經營組織面에서 會社의 形態를 갖는 業體는 14%인 49個, 會社以外의 法人形態는 5%인 16個에 불과하여 전체의 81%를 점유하는 283個의 企業은 個人所有의 形態로 구분되고 있다. 總雇傭人員 12,

〈表 1〉 出版產業現况

從業員 規 模	企業體數	從業員 1人 當 額	從業員 1人 當 生 產 額	從業員 1人 當 附加價值	企業當 附加價值	企業當 資	從業員 1人 當 對 有形固 定資 產	從業員 1人 當 對 有形固 定附 加價 值	(단위: 百萬원) 比 額 (%)
		給 與 額	生 產 額	附加價值	資	資	產	產	
5~ 9	127	2.3	12.1	6.3	43.4	33.4	4.9	0.52	
10~ 19	103	2.8	15.8	8.3	111.7	68.8	5.1	0.52	
20~ 49	71	3.0	17.5	8.3	246.5	187.0	6.3	0.47	
50~ 99	26	3.3	17.3	7.5	498.3	419.2	6.3	0.43	
100~199	9	3.2	15.5	7.9	1,122.6	651.2	4.6	0.51	
200~299	5	3.1	38.7	13.0	3,160.8	1,037.6	4.3	0.34	
300~499	2	3.9	16.0	8.9	3,489.5	2,391.0	6.1	0.56	
500+	5	4.3	26.4	12.9	8,109.0	5,767.0	9.2	0.49	
平 均	348	3.4	20.9	9.7	347.5	230.4	6.4	0.46	

資料：經濟企劃院, 『礦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4에서 算出。

528名中 自營業主 및 無給家族從事者가 전체의 2.5%인 313名, 被雇傭者中 生產職勤務는 60%인 7,528名, 事務職 및 기타 從業員은 37.5%인 4,687名에 달하고 있다. 즉 出版產業은 全體從業員中 生產職이 차지하는 比重이 우리나라 全產業中 제일 낮은 반면 事務職의 比重은 제일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國內 出版圖書의 流通過程上의 문제점, 即 出版社가 良書의 出版으로 國民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努力보다는 類似한 製品의 販賣競爭을 통한 賣出額 增大를 위하여 營業 및 販促人員을 과다하게 保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從業員 1人當 生產額 및 附加價值는 200~299名을 雇傭하고 있는 企業體가 39백만원과 13백만원으로 제일 높으며 나머지 企業은 12백만원~27백만원과 6백만원~13백만원 水準으로 分布되어 있다. 반면 종업원 1인당 有形固定資產은 200~299名을 보유한 企業이 4.3백만원으로 제일 낮다. 이는 出版企業의 最適

規模(optium scale)가 從業員 200~299名 雇傭規模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給與面에서 살펴보면 종업원 1人當 年平均給與額은 340만원에 이른다. 賃金水準은 企業規模가 增大함에 따라 比例的으로 上昇하여 5~9名 雇傭業體의 平均 年給與額이 230만원임에 비하여 500名以上 雇傭業體는 이보다 약 2倍 높은 430만원에 이른다. 이는 出版產業의 賃金이 從業員의 生產性과는 관계없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生產原價面에서 살펴보면 總生產額中 直接生產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53%를 점유하며 間接生產費는 全製造業中 제일 높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間接生產費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國內出版產業이 出版物의 品質向上보다는 販賣促進을 위한 諸活動費가 他產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984年的 國內 總出版物을 國內外 著者別로

〈表 2〉 圖書出版現況(1984)

(단위: 種, 千원, %)

	國內總出版 ¹⁾		翻譯出版		UCC(死後25年)		배른(死後50年)		B/A	C/B	D/B
	種數	金額(A)	種數	金額(B)	種數	金額(C)	種數	金額(D)			
總類	695	16,999,775	96	309,006	84	289,640	86	297,840	1.8	93.7	96.4
哲學	1,239	6,440,783	510	2,916,448	339	1,395,131	357	1,555,513	45.3	47.8	47.8
宗教	2,503	40,374,117	927	4,269,558	856	3,896,429	862	3,918,728	10.6	91.3	91.3
社會科學	3,968	23,798,805	506	1,650,529	458	1,612,059	462	1,618,229	6.9	97.7	98.0
純粹科學	696	4,008,798	235	1,056,530	233	1,054,230	234	1,055,230	26.4	99.8	99.9
技術科學	2,901	17,002,881	221	1,776,259	220	1,768,759	220	1,768,759	10.5	99.6	99.6
藝術	1,689	18,275,815	204	948,610	139	755,970	143	770,650	5.2	79.7	79.7
語言學	1,611	25,419,919	332	3,932,830	328	3,873,730	328	3,873,730	15.5	98.5	98.5
文學	7,861	36,228,514	3,033	15,528,504	2,049	9,274,316	2,260	10,209,493	42.9	59.7	65.7
歷史	993	5,938,114	117	381,393	101	363,167	103	368,392	6.4	96.6	96.6
兒童圖書	5,553	41,731,595	2,551	11,134,184	1,046	4,604,315	1,136	5,059,928	26.7	41.4	45.4
學習參考書	3,547	168,003,810	23	111,250	18	71,250	18	71,250	0.1	64.0	64.0
合計	33,156	404,282,926	8,255	43,975,100	5,871	28,958,995	6,209	30,567,741	10.9	65.9	69.5

資料: 1)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86.

그 외는 韓國開發研究院.

분류하면 翻譯된 外國人著作物은 8,255種에 440億으로 全體種數와 金額面에서의 비중은 각각 24.9%, 10.9%이며 이는 内國人著作物에 비해 卷當平均價格이 낮음을 의미한다.

出版分野別 外國人著作物의 比重을 살펴보면 哲學이 全體出版의 45%인 29億원으로 제일 높고, 다음은 文學이 43%인 155億원, 兒童圖書가 27%인 111億원, 純粹科學이 26%인 11億원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 만약 우리나라가 外國人著作權을 遷及하여 50年 認定한다고 할 경우 外國人이 著作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國內出版物의 規模는 兒童圖書가 翻譯出版物의 45.4%인 50億원으로 가장 낮으며 哲學이 48%인 16億원, 學習參考書는 64%인 0.7億원, 文學은 65.7%인 102億원으로 나타난다. 즉 이는 翻譯出版의 比重이 큰 分野中 兒童文學, 學習參考書, 文學, 哲學 等은 著作權을 遷及認定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는 出版物의 比重이 큰 반면, 純粹科學, 技術科學, 語學 等은 비교적 최근에 著述된 外國人著作物

을 翻譯하여 國내出版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外國人著作權의 認定과 더불어 심각한 영향을 받는 分野라고 할 수 있다.

이들 翻譯出版物이 外國에서 최초出版된時點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全體의 21%인 1,723種, 金額上으로는 全體의 17%인 약 77億원이 外國에서 1977年⁶⁾以後에出版된著作物로 밝혀졌다. 年度別로는 1982年, 즉 外國에서 出刊된 지 2年 경과된 著作物이 同期間中出版物의 37%인 639種이 翻譯出版되었으며 金額面으로도 全體의 42%인 32億원을 차지하고 있다(表 3 참조).

出版物 統計에 포함되지 않은 外國人著作物의 複製(reprint) 規模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金額으로 年間 약 150億~250億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IV. 外國人著作權保護의 經濟的 波及效果

〈表 3〉 著作年度別 翻譯著作物
(단위: 千部, 千원)

	種類(A)	部數(B)	總額(C)
1977	129	250	521,000
1978	179	252	643,496
1979	182	303	989,883
1980	198	288	928,633
1981	220	495	825,607
1982	639	1,488	3,208,327
1983	131	152	348,695
1984	45	85	205,359
合 計	1,723	3,413	7,671,000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6) 著作權에 관한 韓美協定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行政指導를 통하여 美國의 著作權을 10年(즉 1977년 이후부터)間 遷及保護하기로 한 바 있다.

外國人著作權保護의 經濟的 波及效果는 현재까지 國내에서 아무 계약없이出版할 수 있었던 外國人著作物의 無斷翻譯·複寫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發生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첫째 外國著作權者와 著作權 讓渡協商을 통한 著作權 使用料의 支給없이 國내에서 翻譯出版이 가능함으로써 낮은 價格으로 出版物의 生產·販賣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外貨支出이 절약될 수 있었으며,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外國著作物의 翻譯·複寫出版時 著作權 讓渡協商이 불필요하여 비교적 短期間內에 새로운 先進文化의 유입이

가능하였다. 반면 短點으로는, 첫째 一部出版物의 重複翻譯・出版으로 인한 出版市場秩序의 沮害 및 重複된 社會費用의 支給, 둘째 世界的인 海賊出版國으로 인식되어 國家의 信賴性墜落과 빈번한 對外貿易摩擦 要因으로의 作用 등을 들 수 있다.

外國人著作權 保護強化로 인한 經濟的 波及效果의 經路와 規模는 보다 엄밀한 意味에서 다음의 要素에 의하여 決定된다. 첫째 著作權法의 內容과 運用方法이다. 특히 著作權의 保護期間, 著作權利의 遷及與否(retroactivity), 公正使用(fair use)과 強制實施權(non-voluntary license)의 範圍와 運用方法이다. 현재의 著作權法은 著作權의 保護期間을 著作者의 生存期間과 死後 30年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改正著作權法은 著作者 死後 50年으로 規定하고 있다⁷⁾.

著作權의 遷及 保護한 改正著作權法의 發效에 의하여 外國人의 著作權이 保護될 경우 과거에 이미 國內・外에서 出刊된 著作物도 遷及하여 保護할 것인가의 與否이다. 만약 外國人著作物의 保護를 遷及하여 認定할 경우 著者 死後 50年⁸⁾이 경과되지 않은 外國의 著作物은 앞으로 著作權者的 허락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出刊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遷及을 不認定할 경우에는 이미 國內・外에서 出版된 著作物은 公共財(public goods)로 規定되어 著作權이 認定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이

7) 改正著作權法(案) 第34條

國際著作權保護協定인 U.C.C.는 최소한 著作者의 死後 25年以上, Berne 條約은 死後 50年으로 規定하고 있음.

8) Berne條約 基準.

9) 改正案 附則 第2條 參照. U.C.C.는 著作物의 遷及에 관하여 明確히 規定하고 있지 않은 반면 Berne條約은 著作權의 遷及認定을 明文化하고 있다.

10) 改正著作權法 第20~33條.

자유로이 翻譯・複寫出版이 가능하며 앞으로 세로히 著述되는 創作物에 대하여만 著作權이 認定된다. 改正著作權法은 外國人著作權의 遷及을 認定하고 있지 않다⁹⁾. 다만 美國에서 著作權이 認定된 出版物中 1977年 以後에 간행된 著作物의 複寫는 行政指導를 통하여 國내出版・配布를 著作權改正法의 公布와 동시에 禁止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著作物의 公正使用(fair use)은 社會의 公益을 위하여 일정한 範圍內에서 著作權者의 著作財產權을 制限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에 대하여 改正著作權法은 裁判節次, 學校教育, 時事報道, 引用, 非營利目的, 私的使用, 圖書館利用, 試驗問題, 占字, 放送事業者的 一時的錄音 등을 위하여 著作物을 翻譯・複寫하여 利用하는 경우에는 著作權을 制限하고 있다¹⁰⁾.

둘째 改正著作權法이 發效되어 外國人的 著作權이 保護될 경우 外國人著作物의 翻譯・複寫를 위하여는 著作權者的 허락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國내에서 外國人著作物에 대한 需要가 發生할 경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方법은 ① 外國人著作權者가 國내出版者에게 적정한 條件으로 利用을 許諾하여 著作物을 出版하도록 하는 경우, ② 外國人著作權者가 國내에 合作 혹은 外國人投資出版會社를 設立하여 直接出版에 간여할 경우, ③ 外國人著作權者가 外國에서 出版된 完製出版物을 輸出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經濟的 波及效果는 利潤極大化를 目標로 하는 外國人著作權者가 어떠한 方法으로 外國人著作物의 國내需要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의하여 費用적으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세째 著作權의 改正과 동시에 國내에서 出版되는 外國人著作物의 國내價格은 著作權料

支給에 따른 生產原價의 增加로 인하여 上昇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消費者의 需要行態가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外國人著作物의 複寫·翻譯物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值에 의하여 決定될 수 있다. 外國人著作物의 需要에 대한 價格彈力值는 著作物의 性格¹¹⁾, 代替著作物의 存在有無¹²⁾ 등에 의하여 決定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外國人著作權을 認定할 경우의

- 11) 專門書籍의 경우 가격의 변화에 비하여 需要의變化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弹力值은 매우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 12) 替代著作物이 存在할 경우 가격이 他著作物를 替代되므로 弹力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13) 著作權 使用料는 著作物의 特性, 著作權者의 選好 등에 따라 賣出額의 一定率以外에도 여러 가지 形態를 支給될 수 있다.
 - 14) 外國人著作權이 認定될 경우 國內企業은 外國人著作物의 翻譯, 審寫出版을 위하여 著作物者로부터의 出版許諾와 이에 대한 著作權 使用料의 支給이 불가피하다. 理論의으로 外國人著作權을 讓渡받은 企業은 國내에서 排他的인 出版權을 保有하게 됨으로써 市場은 完全獨占狀態로 变하게 된다. 著作物의 支給은 出版企業의 可變費用을 통하여 生產原價와 出作物價格의 上昇을 의미한다. 利潤極大化가 목적인 獨占企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가격과 出版量을 決定한다.

$$(1) \quad P_1(y) + \frac{Q}{P} \cdot Q_1 = \Delta C_1^v$$

여기서, $P_1(y)$: 著作料 支給後의	出版物價格
Q_1	: 著作料 支給後의	出版物生產量
P, Q	: 著作料 支給前의	出版物價格 및 生產物
ΔC_1^v	: 著作料支給으로 인한	界限生產費 用의 增加

式(1)을 다시 需要의 價格彈力值(price elasticity of demand)를 활용하여 表示하면,

$$(2) P_1 \left[1 + \frac{Q_1}{P_1} \cdot \frac{dP}{dQ} \right] = P_1 \left[1 + \frac{1}{\varepsilon} \right] = \Delta C_1^o$$

여기서 ϵ 는 價格上昇에 대한 需要量의 變化를 意味

式(2)에서 만약 우리가 著作權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價格과 出版量, 즉 P, Q 와 著作權使用料 및 需要의 價格彈力值(ϵ)에 관한 資料를 갖는 경우,

$$(3) P_1 = P(1 + \alpha)$$

$$(4) Q_1 = \varepsilon \frac{(P_1 - P) \cdot Q}{P}$$

外國人著作權者에게 支給되는 著作權料는
 $R = \alpha \cdot P_i Q_i$ 으로 表示된다.

經濟的 波及效果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推計될 수 있다. 먼저 論理의 전개를 위하여 다음을 사항을 假定하자.

- (1) 國內企業은 著作權移轉을 통하여 外國人著作物을 出版하여 國제판례에 준하여 翻譯 및複寫物의 著作權使用料는 消費者價格의 7%와 15%로 한다¹³⁾.

(2) 翻譯物과 複寫物의 國내 出版金額은 1984年末 統計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440億원과 200億원으로 推定한다.

(3) 국내의 外國人著作物에 관한 市場構造는 外國人著作權者의 認定前과 後에 變화가 없다고 假定한다. 일반적으로 外國人著作權의 사용을 허락받은 企業은 國內市場에서 獨占出版權을 확보하여 企業의 利潤極大化를 위하여 限界費用과 限界收入이 均衡($MC=MR$)되는 점에서 價格 및 生產量을 결정할 것이다¹⁴⁾.

그러나 國內의 外國人著作物 需要者가 公正
使用에 관한 규정을 效率的으로 활용하고 著
作權 關聯當局이 強制實施權을 최선의 방법으
로 運用한다면 市場構造는 完全競爭狀態를 계
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 (4) 出版物의 國內流通經路는 出版企業→書籍商→最終消費者의 形태로 構成되며 出版物의 最終價格決定을 위하여 出版企業 및 書籍中間商은 mark-up pricing戰略을 采른다고 假定한다.

出版企業의 經營目標는

여기서 π : 出版會社의 利益

P. · 出版會社의 出荷價格

Q : 出版會社의 販賣量

〈表 5〉 外國人著作権保護의 波及效果(複寫出版物)

(단위: 千원)

탄력치	0.3	0.7	1	1.5	2
1987 賣出額 著作料	667,913 100,187	595,706 89,356	541,550 81,233	451,550 67,694	361,031 54,155
1988 賣出額 著作料	2,007,744 301,162	1,790,688 268,603	1,627,900 244,185	1,356,588 203,488	1,085,263 162,789
1889 賣出額 著作料	18,815,188 2,822,278	16,781,113 2,517,167	15,255,556 2,288,333	12,712,963 1,906,944	10,170,369 1,525,555
1990 賣出額 著作料	25,235,888 3,785,383	22,507,681 3,376,152	20,461,525 3,069,229	17,051,275 2,557,691	13,641,019 2,046,153
1991 賣出額 著作料	33,261,178 4,989,267	29,665,913 4,449,887	26,969,013 4,045,268	22,474,175 3,371,126	17,979,934 2,696,901
著作料 合計	11,998,277	10,701,165	9,728,248	8,106,943	6,485,553

給額은 180원으로 산출된다. 만약 外國人著作物의 翻譯出版規模가 年 10%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需要의 價格彈力值(price elasticity of demand)에 따른 外國人著作權 使用料의 支給은 〈表 4〉와 같다.

〈表 4〉에 의하면 1987年부터 우리나라가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할 경우의 波及效果는 需要의 價格彈力值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彈力值(ϵ)와 波及效果는 反比例한다.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하기 시작하는 1987年度의 著作料支給額은 約 16百萬원~21百萬원으로 추정되며 1987~91年 기간중의 著作料支給 總額은 約 16億원~20億원으로 예상된다.

外國人著作物의 複寫出版物은 어떠한 종류

의 著作物이 出版되고 있으며, 外國人이 著作物을 創作한 후 업타임의 시간이 경과되어 國內에서 出刊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資料의 菲集이 불가능하다. 일일적인 複寫出版物이 外國에서 최근 出刊된 專門書籍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需要의 弹力值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價格이 上昇할 경우 公正使用을 통한 私的複製가 가능하여 오히려 弹力值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4年的 國內市場規模를 200億원으로 추정하고, 年 成長率을 10% 假定할 경우 外國人著作權保護時 國內複寫出版物市場에 미치는 波及效果의 推計는 〈表 5〉와 같다. 만약 우리나라가 邊及을 認定하지 않고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할 경우 1987年的 著作料支給額은 約 54百萬원~1億원으로 推定되며, 1987~91年 기간중의 著作料 總支給額은 約 65億원~120億원으로豫想된다¹⁷⁾.

이상에서 推定된 翻譯과 複寫出版物에 대한 總著作料支給額을 〈表 6〉을 통해 보면 外國人

17) 外國人著作權者는 國內出版企業에게 著作物使用權을 移轉하지 않고 合作會社를 設立하여 스스로 國내에서 翻譯物 혹은 複寫物의 出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外國人著作者는 出版物의 數量과 가격조정을 통하여 利潤을 極大化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推計한 결과에 의하면 外國人著作者가 合作會社를 통하여 翻譯物을 出版할 경우 利益은 著作權의 移轉의 경우에 비하여 利益이 낮아짐으로써 대부분의 合作會社는 外國人著作物의 複寫物出版에 主力할 것으로豫想된다. 이 경우 合作會社에 의한 出版物이 대부분 專門書籍으로서 研究 및 學校教育을 目的으로 使用되

著作權의 첫해인 1987年度에는 7千萬~12千萬 원으로豫想되며 1987~91年 기간중에는 약 80億~140億의豫想된다.

〈表 6〉 外國人著作權保護時 著作料支給額 推計
(단위 : 百萬원)

	0.3	0.7	1	1.5	2
1987	翻譯 (1)	21	20	19	18
	複寫 (2)	100	89	81	68
	(1)+(2)	121	109	100	86
1988	翻譯 (1)	62	59	57	53
	複寫 (2)	301	269	244	203
	(1)+(2)	363	328	301	256
1989	翻譯 (1)	458	436	419	390
	複寫 (2)	2,822	2,517	2,288	1,907
	(1)+(2)	3,280	2,953	2,707	2,297
1990	翻譯 (1)	615	585	562	523
	複寫 (2)	3,785	3,376	3,069	2,558
	(1)+(2)	4,400	3,961	3,631	3,081
1991	翻譯 (1)	813	773	743	692
	複寫 (2)	4,989	4,450	4,045	3,371
	(1)+(2)	5,802	5,223	4,788	4,063
合計	(1)	1,969	1,873	1,800	1,676
	(2)	11,997	10,701	9,727	8,107
	(1)+(2)	13,966	12,574	11,527	9,783
					8,038

V. 結論

현재의 著作權制度는 著作物이 인류의 福祉向上에 크게 寄與함을 감안하여 著作者의 權益保護를 통한 著作活動을 促進시킴과 동시에

고 있으며 이들이 著作權法의 公正使用 條項에 의하여 著作權保護에 제외됨을 감안할 때 價格의 대폭적인 上昇은 불가능할 것으로豫想된다. 즉 合作會社에 의하여 出版되는 複寫物의 價格이 현재의 複寫物價格보다 매우 높은 水準에서 결정될 경우 대부분의 利用者들은 私的複寫物을 活用할 것으로豫想되며 때문이다. 따라서 合作會社의 設立에 의한 經濟的 波及效果는 本文의 結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豫想된다.

이러한 著作物이 短期間內에 活用되어 社會福祉에 寄與하게 하려는 두 가지 目的을 포함하고 있다.

강력한 著作權制度에 의한 著作者權益의 過剩保護는 創作意慾을 增大시키는 肯定的 效果가 있는 반면, 著作物의 社會的活用을 制限하고 資源의 非效率的 分配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著作者權益의 保護를 소홀히 하는 著作權制度는 단기적으로는 著作物의 활용을 통한 社會利益의 增大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著作意慾을 沮害하는 否定的 效果가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著作權制度는 著作權者의 權益을 적절히 保護함으로써 同制度가 추구하는 目標를 동시에 達成할 수 있도록 改正・運用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現行著作權法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는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하여 얻는 肯定的 效果는,

첫째 無分別・無責任한 翻譯規制를 통한 海外문화의 選別導入이 가능하며,

둘째 重複翻譯이 防止되어 一部書籍의 出版費가 60~70% 감소될 것으로豫想됨으로써 價格下落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으며,

세째 人類文化暢達에 기여함으로써 對外 이미지의 改善이 가능하며,

네째 著作物의 去來秩序確立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國內創作活動의 促進과 國內 著作物이 海外의 著作權에 의하여 保護됨으로써 얻는 文化的・經濟的長點 등을 들을 수 있다.

반면 外國人著作權을 保護함으로써 우리나라가 支給해야 하는 經濟的인 波及效果는,

첫째 翻譯 및 複寫出版物의 國內價格은 각각 約 12%와 25% 上昇할 것으로豫想되며 外國人著作權者에게 支給될 著作物使用料는

〈表 6〉으로 推定된다.

둘째 外國人著作權者와의 著作權讓渡 교섭이 필요함에 따라 外國著作物의 國內出版이 지연될 수 있다.

外國人著作權 保護로 인한 肯定的인 面을
最大化하고 否定的인 面을 最小化하기 위한
補完策으로는,

첫째 外國著作權者로부터 獨占出版權을 양
도받은 國內企業이 市場獨占的 地位를 惡用하
여 發生될 수 있는 不公正行爲를 規制하기 위
하여 公正去來法의 改善이 必要하며,

둘째 적절한 條件과 形態로 著作物利用權을
國內出版企業에 移轉을 거부하는 外國人著作
權者의 著作權 남용 및 오용을 防止하기 위
하여 國內業界가 強制許諾制度를 신속히 活用할
수 있도록 同制度를 補完하며,

세째 대부분이 零細企業인 國內出版社가 國
際版權契約 慣習에 대한 無知와 교섭능력부재
로 競爭力喪失과 倒產의 위험성이 있음을 감
안하여 政府의 多角的인 支援이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礦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7.
文化公報部, 「著作權改正法律案」, 1986.
鄭鎮勝, 『著作權制度에 關する 研究』, 韓國開

發研究院, 近刊.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5, 1986.